

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 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(쉼터)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- 소재지 : (상담센터) 중구 마른대로 146, 7층
(쉼터) 성북구 ※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생활가정 임대
 - 시설규모 : (상담센터) 288.19㎡, (쉼터) 137.26㎡
 - 주요시설
 - (상담센터) 사무실, 상담실5, 교육장, 커뮤니티공간, 창고 및 탕비실1
 - (쉼터) 총 2개호 / 각 호별(68.63㎡) 방3, 거실, 주방, 화장실
 - 인력운영 : 12명(센터장 1, 회계·행정1, 센터 상담원 6, 쉼터 상담원 4)
※ 운영시간 : 평일 9~18시 / 상시 상담언어 : 6개(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몽골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)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5.1.1.~ 2027.12.31.)
 - 위탁업무
 -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 일체
 - 다국어 전문상담(전화/온라인/대면/현장방문) 및 의료·법률·심리지원 서비스 등 위기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
 - 센터 산하 '한울타리 쉼터' 관리·운영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
 - 의식주 생활서비스, 이용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 - 소요예산 : 789,776천원('24년 민간위탁금)
 - 인건비 621,643천원, 사업비 102,580천원, 운영비 65,553천원
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※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4.7.19.)

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와 연계한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로서,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다양한 기관(대사관, 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이주민지원기관 등)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

제8조(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·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,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
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

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(가족다문화담당관-10011, 2024.6.25.)

※ 작성자 :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서민령 (☎ 2133-8693)